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116
----------	------

제출년월일 : 2009. 12.
제출자 :

1. 제안이유

일부 시세감면조례의 일몰도래에 따라 조문수정이 요구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본래의 감면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조항의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며 지방세법과 중복감면 규정을 정비하여 감면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지방세법에 의한 행안부 준칙조례안에 의거 충주시 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코 저함

2.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으로 신설 규정 반영(안 제2조)
-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용어 정비(안 제4조, 제11조, 제20조)
- “운영”을 “설치·운영”으로 용어 정비(안 제6조)
-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용어 삭제 (안 제7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 감면은 법 감면과 중복으로 삭제(안 제12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에 따른 농어촌특산품생산 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로 인용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13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는 조항 삭제(안 제14조)
- 미분양주택 재산세 감면 세율 개정으로 1천분의 1.5 적용시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의 경우 일반주택보다 세율이 높아지는 효과 상쇄(안 제15조)
-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안 제18조)
-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부동산을 제외한다)”로 신용보증기금의 업무범위 명확히 규정 (안 제22조)
- 향교재단 소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실효성이 없어서 삭제(안 제30조)
-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에서 제외”로 사치성 부동산 감면 배제(안 제33조의 2)
-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충주시 시세감면 신청서”를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로 통일(안 제34조)

3.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4. 기타 참고자료 : 덧붙임

덧붙임: 1.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기타참고자료 (관계법령)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주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으로 한다.

제4조 중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한다.

제6조 중 “운영”을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7조 중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을 제외한다)”를 “부동산”으로 한다.

제11조제1항과 제2항 중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 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를 각각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를 “임대사업자가”로 하고 같은 항제1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를 "임대사업자가"로 하고 같은 항제1호 중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를 "지역특산품생산단지"로 한다.

제13조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에 따른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 중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와 "1,000분의 1.5를" 각각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과 "1천분의 1.5"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자동차로서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운전대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제20조 중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한다.

제21조 중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

상을 제외한다)"를 "부동산"으로 한다.

제22조 중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를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23조 중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를 "부동산"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 2(감면 제외대상)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4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충주시 시세감면 신청서"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u>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u> 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 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 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 ----- ----- ----- ----- -----.
제4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u>주택</u>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4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 ----- ----- <u>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u> ----- ----- -----.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u>운영</u> 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 <u>설치·운영</u> ----- ----- -----.
제7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u>부동산</u>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	제7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 ----- ----- ----- <u>부동산</u> ----- ----- -----.

천 행	개 정 안
<p>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p> <p>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p> <p>-----</p>
<p>제14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삭 제 ></p>
<p>제15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p> <p>「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u>1,000분의 1.5</u>를 적용한다.</p>	<p>제15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p> <p>-----</p> <p style="text-align: right;">「지방세법」 제188조</p> <p>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p> <p>1천분의 1.5-----</p>

현 행	개 정 안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u>부동산</u> (「지방세법」 제112조제2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부동산
<u>제30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u>	<u>< 삭 제 ></u>
<u>②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u>	
<u>< 신 설 ></u>	<u>제33조의2(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u>
<u>제34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시·군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충주시 시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u>	<u>제34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u>
<u>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u>	<u>②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여부 조사·결정서</u>

현 행	개 정 안
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8조(수의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2008.9.26, 2009.2.6>

3. 주택

가.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

의 40

나. 가목 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천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

□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 (농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과 농수산물 가공업, 전통식품산업, 전통놀이산업, 수산레저산업을 비롯한 농어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 제88조의4 (자활용사촌의 지정)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공상군경 1급 중상이자"라 한다)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공상군경 1급 중상이자 20명 이상이 동일한 행정구역(「지방자치법」에 따른 동 또는 리를 말한다)에 마을 단위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마을을 자활용사촌(自活勇士村)으로 지정하여 행정상·재정상의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8.13]